

Vuong Dinh Hue 부총리 주재 MPI 컨퍼런스- KOCHAM 발표 자료

2019.02.14

존경하는 Mr. Vuong Dinh Hue 부총리님,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신사 숙녀 여러분,

먼저 매우 바쁘신 일정임에도 FDI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자 남부지방 빈증성에 오신

Mr. Hue 부총리님과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MPI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기업을 대신하여 발표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해도 베트남의 경제는 여러 통계수치가 보여 주듯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높은 경제 성장률과 안정적인 거시경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치, 경제 지도자들의 지도력과 경제 주체들의 단합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FDI 기업들은 베트남 전체 무역액 4,820억불 중 수출의 71.6%(1,755.2억불), 수입의 60% (1,422억불)를 차지하는 등 베트남 경제의 큰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은 누적 투자액 1위, 7천여개의 투자기업진출로 진출기업수 1위, 한베 양국 교역은 2018년도 657억불로서 교역액 2위(베트남 전체 무역액의 1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 정부의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일관된 노력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Mr. Hue부총리님을 비롯, MPI 관계자 및 관련 부처, 지방성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한국 기업들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많은 투자를 해 왔지만, 베트남의 경제 발전에 따라, 유통, 의료, 교육, 서비스, 스마트시티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도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진출기업들도 대기업을 비롯 많은 중소기업들이 들어왔고, 향후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외국기업들의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규들이 국제 관행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MPI를 비롯, 관련 부처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리며, 한국기업 뿐만 아니라, FDI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몇 가지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수출용 제품 제작을 위한 수입원재료의 관세면제를 부인하는 수출입세법 시행령 No.134(2016.9.1 시행)의 유권해석으로 관련 기업들로 하여금 소급과세 및 과징금 부과 예상되어, 이를 중지해 줄 것을 총리님과 담당부서 재무부에 청원을 드린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베트남 수출제조기업들이 수출을 위한 중간 제품을 생산하거나, 일부 공정을 외주 가공을 통해 수출을 위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FDI기업 뿐만 아니라, 베트남 수출기업에게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이는 베트남의 부품산업 육성에도 장애가 될 것이며, 베트남의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에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두번째로, 이전가격세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베트남정부의 과세 정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규제대상범위가 너무 광대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행 베트남 규정상, 이전가격 보고서 제출대상은 연간 매출액 약 2.24백만불(500억동)이상,

특수관계자 거래 1.35백만불(300억동) 으로서, 현실적으로 FDI기업의 경우, 소규모 업체들까지 모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이 아닌 소규모 기업이 관련 규정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가 어렵고 이에 세무당국의 임의성이 게재되기 쉬워 기업들에게는 매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매출액 약 9천만불(1천억원), 특수관계자거래 약 45백만불(500억원)이상으로서 베트남과는 40배 또는 33배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기타 산업화된 외국의 경우를 참조하여 합리적인 규모로 상향 조정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이전가격은 세무 분야 중에서도 매우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로서, 이에 합당한 교육 및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조사를 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이나 중국에서도 이전가격 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에서 할 수 없고 반드시 이전가격전담 부서에서만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과세방지를 피하고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조사가 되도록 전담 조사부서에서만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화 해주시기를 건의 합니다.

세번째로, 오래 전부터 투자를 진행해온 기업들의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가 지연되어 이에 대한 부총리님과 MPI 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베트남 내 약 2만명의 현지 직원을 고용하고 마트, 백화점, 호텔, 시네마, 롯데센터하노이 등을 운용중인 롯데그룹의 경우, 호치민시의 투티엠 지역에 Eco Smart City 복합상업시설 개발을 오랫동안 준비 중에 있으며, 예치금 및 이행보증금 납부하고 2018.1월 자본금을 출자완료 하였으나, 아직 1/500 마스터플랜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GS E&C의 경우, Tan Son Nhat-Binh Loi BT사업은 2007년 투자허가를 받아 2016년 8월 도로를 호치민시에 인도하여 호치민시 인프라 환경개선에 큰 기여를 한 바 있으나, 시정부로부터 받은 개발사업은 최근 시정부 및 중앙정부로부터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면 추가 투자도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면반-년짜 교량 및 도로를 조속히 건설되도록 지원 요청 드립니다. 베트남 교통부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EDCF 차관 공여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조속히 진행된다면 년짜-호치민 물류비가 상당 부문 절감 될 뿐만 아니라, 호치민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이 30분 이상 줄어들게 되어 편리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주식시장 상장과 관련하여, 제가 알고 있기로는, FDI 기업의 주식시장 상장에 관한 지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이 이슈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PI가 이 이슈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네번째로, 기술이전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기업들은 베트남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소재부품산업 및 중소기업 육성, 기술이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베트남 협력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기술교육을 통해 생산성을 올리고, 2017년까지 26개 베트남 협력업체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설비가동율이 30%이상 개선되고 불량률이 20%이상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효성베트남 타이어코드 및 스판덱스 사업의 경우에도 직원들에게 기술 전수 및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술이전을 위해서는 기술대학과 기술전문과정을 이수한 전문기술인력의 원활한 수급이 매우 필요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향후, 전기, 전자, 반도체, IT, 자동차 산업 등 전문 기술자가 대량으로 필요한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산업성장을 한

단계 레벨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력양성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십년 이상 기술을 축적해 온 기업의 노하우를 단기간에 이전, 습득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기업의 존폐를 다루는 핵심기술이전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베트남으로서는 시간을 갖고 협력과 개발, 투자, 구매를 통해 기술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2018년 3월 한국-베트남 양국 정상은 2020년까지 양국 교역량을 1천억불로 확대하고자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베트남정부에서도 투자 및 비즈니스환경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며, 한국 기업들도 양국의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